

# 현장과 신학 게재 논문심사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부설 구세군신학연구소 발행 현장과 신학 (이하 “현장과 신학”라 한다)의 연구논문의 심사기준을 확립하고, 연구논문에 객관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심사과정)

- ① 투고된 논문은 형식,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받는다. (단, 연구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)
- ② 투고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한다.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은 심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.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.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심사위원 아닌 경우에도 투고된 논문의 전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.
- ③ 투고논문은 KCI(한국연구재단)제공 유사도 검사를 필하고 10% 미만인 경우에만 심사한다.

## 제3조 (심사절차)

- ① 심사 위원에게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해야 한다.
- ② 심사 위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심사마감 일자를 미리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.
- ③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.

## 제4조 (심사기준)

-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심의한다.
  1. 선행연구를 검토
  2. 논제의 중요도 및 관점의 독창성
  3. 방법론 및 자료의 적합성
  4. 논문의 구성과 이론적 정합성
  5. 기술적 완성도
  6. 유용성과 기여도
- ② 각 항목에 ‘4’, ‘3’, ‘2’, ‘0’의 성적을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.
- ③ 종합심사평가 판정은 다음과 같다.
  1. 20점 이상 최우수 : ‘게재가’
  2. 19~15점 우수 : ‘수정후게재’
  3. 14~9점 보통 : ‘수정후재심’
  4. 8점 이하 탈락 : ‘게재 불가’

**제5조 (게재 판정)**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- ① 심사위원 3인 모두 ‘게재가’로 판정한 경우,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최종 원고를 제출하면, 투고자에게 게재 예정 호수를 통보한다.
- ② 심사위원 2인이 ‘게재가’나 ‘수정후 게재’로 판정하고, 1인이 ‘수정 후 재심’을 판정한 경우,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심사위원 2인이 ‘게재가’나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하고, 1인이 ‘게재불가’를 판정한 경우,

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- ④ 심사위원 2인이 '수정 후 재심'을 판정하면, 투고자에게 원고 3개월 이상의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⑤ 동일 주제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없을 경우 '수정 후 재심'으로 판정한다.
- ⑥ 그 밖의 경우는 모두 '게재불가'로 판정하며,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다시 투고할 수 없다.
- ⑦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, 편집 방향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, 결정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빠르게 알려줄 의무를 갖는다.

#### **제6조 (수정 준수 의무와 수정거절 가능)**

- ①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② 심사자의 수정제안이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담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
#### **제7조 (인터넷이나 전자우편 활용)**

- ① 원고 투고, 심사, 편집위원회의 논의 과정 등에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, 이에 관련되어 생겨난 미비점은 관행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 (단, 정보 유출 등 전자우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의 가능성을 관련자(심사위원 및 편집위원)에게 미리 경고하도록 한다.)

**제8조 (세부 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규정에 따른다.

**제9조 (규정의 개정)** 본 규정의 제, 개정은 구세군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안건발의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
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